

##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일고제찰

김창룡

국민일보 기자

### 1. 서론

한 나라의 관행이나 제도는 그 시대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다. 특히 사회변화에 민감하며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언론계의 관행은 그 사회가 갖는 가치구조와 일 처리방식, 조직간 역학관계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한국 언론계에도 사회변화와 함께 사라진 관행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변동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의 좋은 취재관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여기서의 그 동안 언론계에 당연시돼온 관행이 발전적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취재관행이라 하면 정보나 뉴스 감을 찾는 일선취재기자들이 취재상 공직자나 일반인등 취재원과의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적 취재행위로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런 취재기자의 취재관행과 함께 뉴스 제작, 보도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언론관행도 포함시켰다. 즉 이 취재관행이란 일반 시청자나 독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뉴스나 정보물의 취재, 제작에서 보도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을 의미한다. 그것은 취재관행이라면 단순히 취재기자들의 취재행위로 좁혀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뉴스제작메카니즘 전체에 대한 관행이 간과돼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취재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재기자 중심의 취재행태적 관행과 뉴스제작과 보도에 깊이 관여하는 부장, 국장, 경영자 중심의 보도제작상 관행으로 구분, 접근했다.

연구자가 이렇게 구분하여 주제에 접근한 이유는 뉴스나 정보가 일반적으로 취재기자에게 의해 취재된 후 다음 단계로 부장, 국장, 경영자 등의 손을 거쳐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취재와 보도부분의 형식상 분리가 불가피했다.

언론계에서 취재기자와 데스크, 국장의 업무는 합동으로 뉴스를 제작, 보도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취재기자는 일차적으로 뉴스밸류 차원에서 기사감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책임을 지고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는 가치판단은 전적으로 부장과 국장, 경영자의 소관사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자 개인 차원에서 지속돼온 취재관행과 기자, 언론사 간부가 합작으로 지속시켜온 보도관행으로 대별했다. 이 주제연구를 위해 두 가지 연구방법을 택했다. 인터뷰와 케이스 스터디가 그것이다. 이 두 정성분석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끌어내고자 했다.

이 연구에 인용될 케이스 스터디는 1) 신분사칭(국민일보 김규원 기자) 2) 신분사칭 및 주거침입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 3)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토요신문) 4) 임수경

허위인터뷰(연합통신 외 6개신문사) 5) 서해훼리호 사건(전언론사) 6) 인천북구청사건(전언론사) 7) 석·박사학위 논문 가짜제조사건(월간조선 93년 8월호) 8) 서울대 여대생 호스티스 충격고백편(조선일보 발행 여성잡지 필지 94년 8월호) 등 8건이다. 인터뷰는 최근 약 1개월 동안 주로 서울과 인천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이 된 사람은 이 연구에 인용된 케이스 스터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 검사, 언론인 등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대상명단 1) 장용국 부장판사, 2) 곽상도 검사(강력부) 3) 김종길 부장정사(조사부) : 4) 김태현 부장검사(특수부) 5) 이훈규 부장검사(형사3부) 이상 1월 현재 인천지법소속, 6) 임수경 7) 이병규 세계일보 차장 8) 김규원 국민일보 기자 9) 예영준 중앙일보 기자 10) 모일간지 광고국장(본인의 무기명 요청으로) 등이다.

## II . 언론계 관행

### 1. 취재행능적 관행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관행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취재원들로부터 존지를 받는 반윤리적 관행에서부터 명백한 위법사항인 신분사칭이나 주거침입, 허위날조기사 유포 등 그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명백한 범법행위이자 취재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취재기자 자신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요구되는 신분사칭이나 주거침입, 문서절취, 허위기사 유포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가운데서도 현대사회와 언론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분사칭과 허위인터뷰 이 두 가지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될 케이스 스터디 가운데는 사법적 처리를 받은 것이 있는가 하면 검찰과 언론사의 타협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처리된 것도 있다.

기자들의 무리한 혹은 위법 취재는 기자들의 윤리의식 부재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밀실수사, 밀실행정, 언론의 지나친 상업주의, 특종욕심, 취재강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분석해 본다.

#### [신분 위장]

과거나 지금이나 기자들의 신분위장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뛰는 사건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 이런 행태의 편법을 취하지 않으면 취재가 되지 않음을 쉽게 실감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은 이런 신분위장이 과거는 목인돼 왔지만 현재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명한 차이점을 깨닫지 못하거나 막연히 언론사에서 알아서 막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불법취재를 한 기자는 특종을 올렸을지 몰라도 자신에게 닥친 비난이나 공격에 속수무책 이었다. 그 사례를 살펴 본다.

#### <사례 1> 국민일보 김규원 기자건

1993년 봄, 김문기 국회의원의 「상지대 재단비리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하나씩 공개될 무렵, 당시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로 법조를 출입하던 김규원 기자에게 김 의원의 자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추적취재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경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서 이 사건에 손을 댔을 무렵 김 기자는 검찰이 모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불러 일요일 밤 비밀리에 철야조사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다음은 김 기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밝힌 당시 신분을 위장하게 된 경위다.

「...검찰이 분명히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함구령을 내렸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재가 먹히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취재가 안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무능한 기자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취재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막막했다. 나는 마침내 극약처방을 생각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수사관으로 행세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 문제의 금융회사에 도착한 나는 모 자금부장을 다방으로 불러냈다. 자꾸 사장실로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그 제의를 거부하고 결국 다방에서 만났다. 내가 대검 수사관으로 소개하자 그는 수상하게 여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나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우면 이곳 대검으로 전화해 보라고 큰소리 치며 전화번호를 들이 밀었다. 그제서야 그는 안심하고 진술을 시작했다. 나는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왔으니 그 이상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설득, 협박했다. 인터뷰는 성공리에 마쳤고 이기사는 사회면 톱을 장식했고 인터뷰 기사는 따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박스로 처리됐다...」

김 기자는 대검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해 「상장 없는 특종」을 엮어냈으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법무부는 발각 뒤집혔고 법무부에서 진상조사 결과 김 기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사칭해 취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공보관은 직접 대검 기자실에 들러 「이런 식으로 취재하면 곤란합니다」고 점잖게 말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본때를 한 번 보여줘야 한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중의 서울지정 검사장은 정규원 기자가 법원출입 기자지만 대검에서 수사,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법처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법조 출입기자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있어온 취재관행이지만 이번만은 사법처리 하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입장에 동요가 시작된 것이다.

결국 언론사 막후로비가 시작돼 가까스로 김기자는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었지만 출입처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한견주의에 희생된 불나비같은 존재가 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언론사 내부적으로 기자정신이 투철한 재목으로 간부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대검에서는 이런 식의 불법취재에 이미 이 때 칼을 뽑아 들려고 했었다 김 기자의 사례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취재기자들의 보도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정확히 1년 뒤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 <사례 2>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건

사학재단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문고비리 취재와 관련해 1994년 3월 검찰에 의해 주거침입,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중앙일보 예영준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입사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자 초년생 예 기자는 공무원 사칭에다 주거침입, 문서절취까지 추가돼 그 동안 언론계 선배들이 별 죄의식 없이 저질러온 취재관행의 업보를 시범 케이스로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 됐다.

예 기자는 지난해 3월 17일 검찰직원을 사칭해 상문고 서무과장 김순자씨 집에 들어가 서류 등을 뒤져 이중 일기장과 일부 서류를 들고 나와 말썽이 난 것이다. 예 기자는 처음부터 신분을 사칭해서 서류를 뒤져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김순자씨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 일어난 우발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예 기자가 직접 밝힌 당시 신분위장 경위다.

「...김순자씨를 만나기 위해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으나 만나기 힘들었다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일단 부딪쳐 보자는 심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누구냐는 소리에 기자라면 만나줄 것 같지 않아 엉겁결에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예 기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자신의 말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신분사칭과 주거침입, 무한서류절취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언론계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지만 범죄행위로까지 비화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만큼 그 동안의 신분사칭 취재관행은 뿌리가 깊고 일반적으로 공익을 우선한다는 명분이 한 개인의 사익에 우선하는 사회분위기였던 것이다.

서울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3월 27일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영준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0월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예 기자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 동안의 언론사 취재관행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 관용을 택한다」 며 형선고유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선고문에서 「이제는 언론활동도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굳이 실형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 언론계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 [허위 인터뷰]

허위인터뷰란 인터뷰를 취재대상과 하지 않고서 마치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거나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조 기사가 나갔을 때 내용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그 반대일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된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중 하나는 법정으로 비화된 것이고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 정정보도문을 내보낸 것이다.

### <사례 1> 전병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전

부인과의 허위인터뷰 1993년 12월 8일 대부분 언론에서 전 청와대정책수석비서관 전병민 씨의 전 부인이 토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전병민 씨 전 부인이 소송을 낸 내용의 골자는 「토요신문과 인터뷰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허위로 보도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는 지난 93년 12월 7일 전병민 씨의 전 부인 최모 씨가 토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요신문사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요신문사가 지난 3월 13일자(1993년) 신문에서 최씨와 인터뷰한적이 없음에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 등을 속속들이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 토요신문사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빚었다.

## <사례 2> 김일성 주석 사망과 임수경과의 허위

인터뷰 94년 7월 9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각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이중 연합통신은 김일성주석 사망과 관련해 각계 반응을 취재하면서 임수경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각 언론사에 내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수경(27·서강대 대학원)=김 주석을 직접 만났을 때는 건강하셨는데 일단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애석하다. 일부에서는 김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 동안 김 주석은 분단체제의 일부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김 주석 사망은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접한 임수경 씨 본인은 당황했다. 연합통신 기자를 만난 적도, 전화 통화 한번 한 적도 없었는데 마치 자신과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화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임수경 씨는 연구자에게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경위를 이처럼 밝혔다.

「...일부 신문에 등장한 나의 인터뷰 기사가 너무 황당해 전화로 항의하자 연합통신에서 보낼 기사를 그대로 실은 것이라고 변명해 연합통신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유를 물으니 오히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려 할 수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측의 중재결과 임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연합통신 측에서 정정보도가 나가고 취재기자가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취재원 임씨를 가운데 두고 떳떳하지 못한 취재관행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 2. 제작보도상의 관행

제작보도상의 관행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한국 언론이 정확보다 신속을 더 강조하는 보도관행에서부터 검찰의 발표는 일단 사실로 믿는 관행, 취재원보호를 맹신하는 관행, 기사보다 광고우선주의 관행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타파해야 할 관행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사례 1> 서해훼리호 사건

93년 10월 10일 서해 격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훼리호 사건은 사망자수가 2백 92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사고였다. 이 해상사고에서 주장된 백운두 선장 생존보도는 우리 언론사에 씻을 수 없는 오보가 됐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백선장생존설, 중국도피설, 잠적설 등 검찰발표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해 끝까지 배를 지키다 숨진 백선장을 두 번 죽게 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보가 발생한 데는 언론계 내부의 잘못된 속보경쟁, 한건주의식 특종경쟁, 무책임한 선정주의, 검찰정보는 사실로 간주하는 편의주의 등 후진적 취재관행이 한몫 톡톡히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취재기자들이 「배와 함께 죽은 것이 확실시 된다」고 기사를 송고했으나 부장손에서 「살아 있다」로 엉뚱하게 변조돼 나가기도 했다.

「죽었다」는 내용을 「살아 있다」로 1백 80도 바꾼 데스크 중의 한명인 세계일보 이병규 사회부차장은 연구자에게 이처럼 토론했다.

「현장기자가 백선장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기사를 보냈는데 타 언론사 기사내용을 보니 대부분 '살아 있다' '도피 중이다'는 식으로 보도돼 우리만 죽었다는 식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더구나 방송에서도 검거령과 함께 살아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모험을 하느냐 안전한 길을 택하느냐 고민에 빠졌다. 결국 대세를 따랐지만 특종을 놓친 셈이 됐다. 현장취재 기자에게 미안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어느 신문사가 특정사건을 보도하면 너도나도 덩달아 확인 없이 보도하는 떼거리 저널리즘, 정확성보다 속보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한건주의, 검찰의 보도자료나 발표는 사실로 규정하는 편의주의 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사례 2> 인천북구청 세금횡령 사건

인천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은 94년 9월 북구청의 한 여직원이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처음 수천만 원대의 단순 뇌물수수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횡령액수와 조직적인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전국민을 경악시키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50억원 남짓 지방세를 횡령해 1심재판에서 22년 6개월이 선고된 안영희 전 북구청 세무 1계장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온 세금횡령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언론은 수사진행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후진적 관행을 또 다시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도 언론사의 한건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확한 보도보다 눈길을 끄는 화끈한 기사, 주관적 예상을 스트레이트기사로 포함시키는 객관과 주관의 구분모호 등이 드러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관행은 언론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보도관행이었다. 말하자면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은데 「전면재수사에 들어갔다」 「구속방침이다」 「원점재수사에 돌입 했다」 등으로 기사를 키우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났을 때도 검찰은 이원종 서울시장을 소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소환방침」으로 나갔고 구속을 검토하기도 전에 「구속방침」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예상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사실만 전달하도록 된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런 무책임한 무근거의 기사가 나가는 관행이 문제였다.

물론 이 나라 검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못미더워서 언론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나온다고 언론인들은 믿고 있다. 또 때로는 이런 보도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피해 기획이나 특집기사 혹은 분석기사로 다뤄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

더구나 권위지를 자처하는 중앙지들은 「기사 앞서가기」 「기사 키우기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정확한 보도를 위한 신뢰경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인천북구청 사건에서도 각 언론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횡령액을 부풀리고 관련자들의 수를 늘리는 등 지나친 「앞서가기」에 열 올렸다. 타블로이드판에서나 있을 법한 모호한 근거의 부풀린 기사는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장됐음이 금방 드러난다.

### <사례 3> 석박사학위논문 가짜제조사건

연구자는 지난 93년 8월호 월간조선에 석·박사학위논문공장 탐험기란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내용은 대관문화사라는 한 사설조직체에서 주로 특수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을 불법으로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대관문화사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각 중앙언론사에 정기적으로 광고를 게재해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원을 모집해 논문대행을 맡기고 있었다. 대관문화사는 중간에서 논문신청자의 요구대로 비밀리에 자체연구원들을 통해 주제에 맞춰 논문을 제조하는 수법으로 2, 3배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려 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대관문화사 사장이 바로 수천만 원대의 광고제공을 약속하며 광고국장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월간조선을 통해 기사화 했다.

이 보도로 대검에서 즉각 수사에 나서 사장 등 7명의 사회지도층 인사가 구속되고 30여명이 불구속되는 등 대학사회와 연계된 사기꾼들의 석·박사 장사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왔다.

우여곡절 끝에 보도될 수 있었으나 연구자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려야 했다. 협박은 차라리 견딜 수 있어도 은근한 회유는 참으로 거부하기 힘든 압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기사와 광고가 맞섰을 때 과연 언론사 경영자들은 얼마나 기사 우대를 자신할 수 있을까. 더구나 적자가 계속되는 언론사에서 광고가 확보됐는데 기사를 고집하는 기자에게 경영자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취재기자는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기사보다 광고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함께 광고내용을 검증 없이 게재하는 언론사의 무책임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사례 4> 서울대 여대생 호스티스 충격고백 편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여성잡지 「FEEL」은 94년 8월호에서 86학번 서울대 운동권 출신 호스티스의 충격적 고백수기를 게재해 이 기사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례적으로 「말」지에서 이 기사의 조작여부를 밝히는 확인취재에 나서 94년 9월호에서 문제의 이 기사가 조작됐음을 밝혔다. 이어 서울대 86학번의 피해자들은 관련잡지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이 잡지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돼 사실상 중재는 결렬됐다.

이 경우 언론은 어디까지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사의 진실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이란 글의 주인공을 서울대 사회대 전주출신 86학번 여학생으로까지 구체화시켜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서울대 사회대 전주출신 86학번에는 공교롭게도 2명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오모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의심받게 됐고 본인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섰다.

오양은 학적부를 통해 86년도 사회대 입학자명단 가운데 48명의 여학생 명단과 출신고등학교를 확인하고는 전주 출신은 두 명뿐이며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한 학생도 보도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게 됐다.

결국 오양은 이 기사를 쓴 취재기자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는데 실패했다. 이에 오양은 이 기사가 조작된 날조기사라며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21.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정정보도문(반론문)을 게재하라는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손해배상사건은 계속 중에 있다. 이 잡지사 편집책임자는 연구자에게 최근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어차피 법정에서 판가름 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취재원을 밝히려는 요구대로 취재원을 밝힌다면 또 다른 희생자를 내게 된다」고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부인했다.

이같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기자는 직업정신과 관련해 취재원보호와 함께 취재원 공개라는 두 가지 선택중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 그 동안 여성지들이 이따금씩 날조보도로 독자의 흥미를 끄는 기사를 만들어내면서 때로는 관련 당사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적당히 처리되기도 했다.

이미 「전주」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취재기자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 기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됐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잡지의 편집책임자는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기사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서 부분적인 조작이 밝혀진 만큼 이 잡지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

취재원 보호를 황금률로 받드는 곳은 선진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예는 취재원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를 밝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81년 4월 15일 그 해 풀리처상 특집기사 부문의 상을 받은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돼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흑인여기자 자네트 쿠크(당시 26세)가 「지미의 세계」라는 제목 아래 쓴 이 기사는 「지미는 8살, 헤로인 중독 3대다. 고수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이 작은 소년의 가녀린 팔뚝에는 바늘자국이 무수하다. 그는 다섯살 때부터 헤로인 주사를 맞아왔다」는 첫머리로 시작된다. 철모르는 소년 지미는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구나 자기 어머니의 남자 친구가 강요하는 헤로인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아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자가 돼버렸다는 줄거리다. 충격적이고 생생한 묘사로 미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졌다.

80년 7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1면과 간지를 크게 장식하며 미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기사가 허위임이 밝혀진 것은 81년 4월 14일 풀리처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 바로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 스스로에 의해서였다.

쿠크 기자의 이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드러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 74년 워터게이트 사건보도로 명성을 얻은 「워싱턴 포스트」는 그 권위에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

더구나 그 해 65회를 맞은 풀리처상의 명예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겨 81년 미국언론계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쿠크 기자의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수모를 감수했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대 언론사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대형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망신살이 뻗은 날조 기사를 깔아뭉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취재원 보호라는 편리함에 안주, 취재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구속된다 할지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모른 체 눈감고 넘어갈만한 사안이었다.

「나이만 틀린다」 혹은 「이사가 버려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이름만 다르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풀리처상까지 받은 「지미의 세계」는 영원히 신화로 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사회공기로써 보다 정직했다. 그리고 용감했다. 취재원보호라는 편의 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취재원 공개의 길을 택해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감수했다. 이 공개의 용감함은 단기적으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과정의 경솔함과 비윤리적 보도에 비판의 매가 가해졌지만 장기적으로 역시 「정직한 언론」 워싱턴 포스트란 명성의 탑에 돌을 하나 더 쌓는 결과가 됐다. 당장의 수모를 감당할 수 없다면 영광의 금자탑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진리를 새삼 일깨워주는 교훈적 사례가 됐다.

### III. 법 · 윤리상의 고찰

#### 1. 법적차원

한국 언론이 취재관행과 관련해 사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드문 일이었다. 웬만하면 최후의 해결수단인 법 이전에 해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언론환경이 바뀌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취재관행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법적 처리대상에 오르내리게 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자의 신분사칭이다. 신분사칭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고 신분사칭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사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형법 제 118 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김규원 기자건이나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건 모두 이 형법 118 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김태현 부장검사는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때도 일부 기자들이 신분을 사칭한 일이 있었다」며 「이런 신분사칭과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기자들이 아직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예영준 기사사건이 있었지만 아직도 기자사회에서는 신분사칭을 필요악처럼 생각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신분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허위인터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형법상 처벌기준이 없다고 김종길 부장검사는 얘기했다. 다만 허위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거나 사생활이 침해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 조항은 민법 제 750 조와 민법 제 751 조이다.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751 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자신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길 부장검사는 「어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익차원에서 보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명예훼손은 범죄로 잘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언론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법차원의 처벌에서 제외돼 왔었다. 지금도 이런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나 검찰과의 자존심 대결 같은 것이 아닌 한 또 명백한 반사회적 불법취재 행위가 아닌 한 한국언론은 그 동안 특혜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일보 김 기자 건이나 중앙일보 예기자 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언론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자율규제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돼야 언론자유를 포함한 모든 언론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 라는 믿음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 2. 윤리적 차원

언론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느 자유보다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모든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만큼 언론의 자유는 중시되고 있다.

장용국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헌법에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만큼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직무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론윤리란 언론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유재천은 언론윤리란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이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 체계」 1)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광식은 언론윤리의 개념은 「언론의 기본적 가치체계의 확립」 2)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광재는 언론윤리를 「언론인이 언론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철학의 아류」 3)라고 정의 했다.

방송협회나 신문협회 차원에서 윤리강령이 제정돼 있는가 하면 각 사마다 따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해 언론인들의 자정과 공정보도에 노력하고 있다.

기자들의 신분사칭이나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특별히 언론윤리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취재해야만 한다는 중압감, 이미 타사는 어떤 편법으로든 취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특종의 욕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고시를 통해 들어오는 엘리트 기자지망생들이 기자가 된 후 기자의 직업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취재과정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언론윤리강령과 위배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기초교육조차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의 언론학과에서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만 편법이나 불법취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취재해야 할지에 대해 기자나 기자 지망생들은 그 동안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지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게을리하는 것은 언론직이 전문직으로 가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없었던 인터뷰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날조 기사를 만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자의 윤리성과 기자정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확성보다 신속함을 우선시 하는 현재의 뉴스밸류 관행이나 검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사실로 믿는 관행도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자유가 아무리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기의사에 맞게 활동하는 것」 4)이라고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역시 「자유란 책임을 의미한다」 5)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신속함을 생명으로 한다는 이유로 혹은 검찰의 권위를 지나치게 인식, 검찰발표는 사실로 간주해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잠식해 들어갈 때 언론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광고와 관련해 우리 언론사들은 큰 약점을 갖고 있다. 광고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그것이 사회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거나 독자나 시청자를 호소하는 것이라도 그대로 실어주는 잘못된 관행도 간과될 수 없다. 기사와 광고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넘어 기사보다 광고를 우선시하는 일부의 관행도 기자들을 패배주의로 몰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윤리강령 실천요강에는 「광고주나 특정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고 못박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윤리에 충실 한다」 등의 내용도 명시돼있다.6)

그러나 광고에 관한 한 기사개념에서 그 정확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성과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광고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6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물량적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사회범죄를 부추기는 광고도 버젓이 게재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 광고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언론의 기능 중의 하나인 만큼 광고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언론은 그 언론이 갖는 신뢰도 때문에 광고가 그 신뢰도에 편승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만큼 반드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언론은 이 사회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때로는 특권이라 할 수 있는 대우를 누리며 법적으로도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언론의 월권행위나 빗나간 비윤리적 취재관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절실하다.

현행 언론규제, 심의기구들인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각 사의 심의기구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9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뢰성과 규제의 효과, 심의과정의 공정성에서 2점 이하(매우 부정적 기구 0점, 매우 긍정적 기구 4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7)

이처럼 아직도 자율규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규제력이 있는 자율통제 기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관행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온 관행은 대통령의 말한 마디에 혹은 개혁적인 제도개선으로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근절되기는 힘들다는 속성이 있다.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전국이 발각 뒤집혔지만 서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 뚝 뚝 떴다. 이유는 이미 서울은 전산화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천북구청과 같은 원시적인 세금강도 짓은 없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95년 1월 23일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의 전산작업은 잘못됐다는 발표를 했다. 서울시가 세금고지와 납부는 모두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세금횡령은 없다고 장담한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시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탁월하고 부패에는 추상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비리와 부패의 주체들이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은밀한 부패의 수법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수록 법과 제도는 더욱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계의 취재관행은 독자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사회구조 변화와 가치변화 등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이 그 동안 게을리 해온 확인취재와 인권경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한 인식에는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언론계 내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앞의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입증됐듯이 더 이상이 사회가 그런 편법, 탈법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엄격한 법적용이 취재의 영역을 제한하고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취재과정의 정당성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몇 가지 제언으로 이 글을 맺는다.

### **<제언 1> 허위인터뷰**

독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이미 보도된 내용을 다시 재정리해서 보도한다는 안이함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허위 인터뷰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없어야 한다. 이런 날조인터뷰는 언론인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윤리적 재무장의 필요성에 대해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제언 2> 신분사칭**

신분은폐나 사칭은 당분간 언론계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건기자들의 경우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을 때 취재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이들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반드시 회사간부와 어떤 형태로든 신분사칭에 대해 논의를 해서 연대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취재를 포기하든가 해야 한다. 기자개인의 특종욕심 때문에 함부로 신분사칭을 했다가는 앞의 예에서처럼 사법적 처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 **<제언 3> 정확과 신속**

모든 언론이 신속,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그러나 이 신속과 정확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신속하면서 정확한 보도는 일종의 이상이다. 특정사건을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나중 하나 하나 따져보면 엉터리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리 언론은 보편적으로 정확보다 신속을 더 중시한다. 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한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말서 감이다. 런던 타임스는 타사보다 하루 이틀 늦게 보도되더라도 정확도에 우선권을 둔다. 그런 만큼 런던 타임스는 신뢰도가 높다. 권위자들이 대중지와 다르다고 자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뢰도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모두가 권위지고 모두가 대중지다. 아직까지 신속보다 정확한 보도로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답하겠다고 선언하는 언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사 경영자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제언 4> 떼거리 저널리즘

언론인들 사이에 특종을 놓쳐도 낙종만큼은 해서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타사가 보도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 이런 떼거리 저널리즘은 자기 색깔과 개성을 강조하는 각 언론사 고유의 문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 사의 편집방향이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타사 보도에 의연해야 한다. 자사의 편집방침에 맞는 뉴스를 게재하면 된다. 그래야 여러 언론사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 한 신문이나 방송에 난 것은 다른 곳에도 나는 그런 똑같은 신문과 방송은 시청자나 독자로부터 외면 받는 자충수가 된다. 각 언론사가 경영자와 간부들의 보신주의와 기자들의 면피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신문이나 저 방송이나 늘 비슷한 정보나 뉴스를 대할 수 밖에 없다.

#### <제언 5> 보도자료 의존

검찰발표는 사실로 간주하는 풍토를 예시하며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재관행에 접근했다. 한정된 기자의 수로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를 모두 취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취재자료에 의존하지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수도 있다. 취재편의주의의 한 관행으로 이어져온 보도자료 의존은 많은 기자들이 갖는 딜레마 중의 하나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취재를 강요하고 있다. 보도자료는 선별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해야 한다고 평범한 제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 <제언 6> 무분별 광고게재

어떻게 보면 언론 외적인 문제로 비칠 수 있으나 언론조직 안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언론사로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등의 행위도 간과돼 거나 논외로 밀려 날 수 없다. 광고문안에서부터 광고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언론사들은 광고비만 두둑하게 받을 수 있으면 내용에 크게 관여치 않는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광고는 반드시 검증을 거친 믿을 수 있는 회사나 제품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광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언론사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검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가 정보제공 차원에서 인식되기 위해서도 광고주들의 양심에만 광고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

1) 유재천, "한국의 언론윤리" 「언론의 법적 통제, 일촌 한병구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서울: 나남출판사, 1989) .p.225.

2) 안광식, "한국언론의 윤리적 위상" 「사회변화와 윤리」(서울:법문사, 1990). p.328.

3) 이광재, "언론윤리 개념과 그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현대사회와 언론의 자유, 평인  
팽원순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 나남출판사, 1989) . p.256.

4) John Stuart Mill, 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저술 : 법  
문사, 1986) pp.54~55.

5) 서정우 외 위의 책. p.55.

6) 김창룡, "언론과 윤리"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pp.226~228.

7) 김정기 외 2인 "한국언론인의 취재관행과 윤리" 「문민정부시대에 있어 언론의 자율규제  
연구에 관한 토론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1993)p.13.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파리 2 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저술. 「프랑스헌법학」, 「주석 헌법」, 「프랑스 제 5 공화국의 각료제도」 (Parls,  
불어판),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법제의 현황과 과제」 외

현재 영남대 법대 교수,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보공개법 심의위원